



지방재정분야 주요 질의·회신

정 광 량
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

※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1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회신사항을 정리한 것임

1. 기금 존속기한 질의에 대한 회신

Q 질의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) 시행('06.1.1) 전에 제정·시행된 기금설치조례의 경우,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 외에 자치단체에서 신설하여 운용하는 기금은 그 설치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법 최초 시행일(2006.1.1) 이후 제정하는 기금설치조례에 적용되며, 이전에 제정·시행 중인 기금설치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질의회신

- 다만, 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존속필요성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도록 하려는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, 우리 부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.(기금 성과분석 시 '존속기한 명시 여부' 평가 등)
- 따라서,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법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.

Q 질의내용

- 융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융자기간이 최대 15년인 경우, 존속기한을 명시할 경우 기금운용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,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한 융자성 기금으로, 기금존속기한과 융자금 회수 기한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,
- 존속기한 만료로 기금이 폐지되는 경우, 기 융자된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 부칙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융자성 기금 역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.

Q 질의내용

-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“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

A 회신내용

-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되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



도록 하고 있는바,

- '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'이라함은 융자성 기금의 융자재원마련이나, 청사건립 자금마련을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목표액 도달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,
- 특정기금의 존속기한을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기금설치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【재정정책과-3616(2011.07.19)】

2. 기금설치 가능 여부

Q 질의내용 1

- 전라남도과 산업단지 대항개발 사업시행자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Q 질의내용 2

- 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」 설치목적의 타당성

Q 질의내용 3

- 특정지역(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) 개발을 위한 기금보다는 도 전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여부

Q 질의내용 4

- 기금 조성(재원마련)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없는 상태에서 기금조성이 적합한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**조례로 기금을 설치**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**기금의 회계연도별 운용계획 확정과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서** 하도록 하고 있는바, **특정사업 추진을 목적으로하는 기금의 설치 여부, 해당 기금의 운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**할 사항입니다.
- 다만, '기금'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정한 **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**에 해당하는 만큼,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**기금설치의 필요성**(해당 사업이 일반회계로는 추진이 불가능한지, 유사한 목적의 특별회계나 기금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), **재원확보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**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기금의 설치조례안 (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」)에서는,
- 기금의 **용도를 산업단지 조성·관리 및 활성화 사업지원, 국내·외 교육(연구)기관 건립 및 육성 사업 지원, 지역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금 지원으로** 정하고 있는바, 동 사업이 일반회계로는 추진이 불가능한지, 다른 기금과의 중복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,
- 기금의 **재원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보조금 및 출연금,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,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** 하고, 조성예상액은 707억원으로 이중 677억원은 2014년 이후 조성예정으로 되어 있는바, 기금 목적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재원조성 목표액의 적정성, 기금 설치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**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설치일(기금설치조례 시행일)부터 5년이내를 원칙으로**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재정정책과-3732(2011.07.25)】

3.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관련



Q 질의내용

- ○○○군 교회연합회가 설립한 ‘○○ 국제씨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’에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

A 회신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 제4조에 의한 〈별표3〉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일반원칙에 따르면 “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”와 “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” 등에 대하여는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귀 질의의 ‘○○ 국제씨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’에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는 귀 자치단체에서 동 단체가 특정 종교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,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는지의 여부 등을 동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 활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·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
【재정정책과-3817(2011.07.28)】

4. 특정업무경비 병금지급 가능 여부

Q 질의내용

- 특정업무경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급을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병급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 제4조에 따른 〈별표2〉 ⑥ 「특정업무경비 ②

기준액, 주4)에 의하면 “시·도 및 시·군·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 받는 자는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를 병급지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【재정정책과-3844(2011.07.28)】

5. 재정부담 수반 조례안 의결에 대한 질의

Q 질의내용

-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(의원발의)」상 “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출연하여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다.” 고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도시·주거환경 정비기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하여 특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, **동 법률은 기금의 재원을 시·도 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,**
- 도세의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한 사유만으로 **해당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**
- 다만,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(지방자치법 제132조), 만일 **해당 조례 의결전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면 해당 조례의 제정에 절차적 위법**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

Q 질의내용

-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한 조례안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132조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, 그 취지가 **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점** 등에 비추어보면,
- 의회가 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**조례자체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**입니다(대판, 선고2002추16).

【재정정책과-3868(2011.07.29)】

6. 예비비 지출의 위법성 여부

Q 질의내용

-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사업을 자치단체가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처분 가능 여부

A 회신내용

- 예비비는 “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”이나 “예산 초과지출에 충당” 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(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)하는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8조는 “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”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

[지방재정분야] 질의회신

을 할 수 없다”고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– 따라서 예비비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“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”이나 “예산 초과지출에 충당”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와, “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.

○ 아울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은 “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” 하도록 하고 있는바,

○ 양화대교 경간조성사업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면, 동 사업비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또한, 예비비 집행에 대한 법적조치와 관련하여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,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, 「동법시행령」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【재정정책과-3894(2011.08.01)】

7.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지방의회 의결 여부

Q 질의내용

-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(구법 제115조제2항) 및 지방재정법 제44조(구법 제35조)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현행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



Q 질의내용

- 위 두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

A 회신내용

- 채무부담행위란 세출예산 등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그 대금은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발주하는 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

【재정정책과-3921(2011.08.02)】

8. 기금의 용도 관련

Q 질의내용 1

-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기관에 보조금(민간경상보조)을 교부하여 공무원, 도의원,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

Q 질의내용 2

-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인 교육사업에 필요한 항공권, 숙박비는 여비로 따로 편성해야 하는지 여부

Q 질의내용 3

- 기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여비를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지 여부

A 회신내용

-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**‘기금’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,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로는 추진이 불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.**
- 그리고, 우리 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는 **기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(여비, 업무추진비 등)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,**
 - 이는 **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일반·특별회계예산과 비교하여 기금은 비교적 집행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만큼,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고유 목적사업으로만 집행토록 하여,**
 - **기금에서 과도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**
- 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,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, **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금**을 설치하거나, 기존 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**해당 사업이 일반회계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별도 기금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**가 이루어져야 하며,
 - 질의 관련 기금인 ‘남북교류협력기금’ 뿐 아니라, 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**기금의 향후 운용방향(개별 기금에서 관련 공무원의 교육사업추진 여부 등)과 관련하여**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또한 ‘민간경상보조’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
 -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**공공기관인‘경기개발연구원’은 ‘민간보조금’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**

【재정정책과-3937(2011.08.02)】



9.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질의 회신

Q 질의내용 1
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「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(행정안전부령)에서 정한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기준부담률에도 불구하고,

Q 질의내용 2

- 1개 시·군·구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동 규칙 제2조제2항을 근거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시·도의 부담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는지?

A 회신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**시·도지사는 사업별로** 시·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**관할 시·군·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**하여 동 규칙에서 정한 기준부담률에 가감하여 **시·군·구에 차등 지원**할 수 있습니다.
- 동 규칙 제2조제2항은 ‘시·도지사는 **사업별로 관할 시·군·구에 차등 지원**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·도지사가 **특정 시·군·구만을 대상으로 기준부담률을 달리 적용**하는 것은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
- 따라서, 시·도지사가 동 조항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는 **사업별로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한 차등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할 시·군·구에 적용**해야 할 것입니다. ☺

【재정정책과-4017(2011.08.08)】